

2023년 금산인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금산인삼 관련, 관내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3년 금산인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3월 17일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1. 사업개요

가. 사업비: 150백만원

나. 지원내용: 인삼류 제품 수출 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지원

다. 지원대상: 인삼류 제품을 수출한 금산군 관내 생산자

※ 생산자의 동의를 득할 시 수출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금산군 관내 수출자로 한정

라. 지원품목: 홍삼, 홍삼제품, 백삼제품, 기타

마. 사업기간: 2023년 4월 ~ 2023년 12월 (23. 12. 10. 선적분에 한함)

※ 수출물류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단축 가능

※ 출납폐쇄기한(매년 12월 31일)을 고려하여 전년도 12월 1일 ~ 12월 31일
기간의 수출선적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바. 지원기준: 수출물량에 따른 표준 물류비의 5%

사. 지원한도: 업체당 연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아. 주요 변경사항

- 1) 총사업비 감소: (2022년) 220백만원 ⇨ (2023년) 150백만원
- 2) 지원기준 감소 및 폐지: (2023년) 표준 물류비 5% ⇨ (2024년) 폐지
 - * WTO 농업협정 수출보조폐지 합의에 따른 단계적 감축 시행
 - ** 농식품부 가이드라인: ('20~21년) 7% → ('22~23년) 5% → ('24년) 0%
- 3) 수출 증빙 자료 엄격 확인: 제출서류, 관세청(UNI-PASS) 시스템 등의 자료 확인 불가 및 각종 사항(물량, 운송수단 등) 미일치 시, 지원 불가
 - * 「2023년 충청남도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계획」 명시

2. 세부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 1) 인삼류 제품을 수출한 금산군 관내 생산자*
 - * 수출신고필증 상에 제조자로 관내 생산자 표기되어야 함
- 2) 단, 생산자 동의를 득할 시 수출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 * 금산군 관내 수출자에 한함
 - ** 생산자가 수령한 수출 물류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나. 지원품목

- 1) 금산군 관내에서 제조된 인삼 제품

품 명		품 명	
홍삼(본삼)		홍삼제품	홍삼분
홍삼(기타)			홍삼타블렛, 캡슐
백삼제품	인삼분		홍삼분말
	인삼타블렛, 캡슐		홍삼엑스
			홍삼엑스분

품 명		품 명	
백삼제품	인삼분말	홍삼제품	홍삼액즙, 홍삼엑스 (홍삼정, 홍삼정분 제외)
	인삼엑스		홍삼차
	인삼엑스분		홍삼조제품 (홍삼캔디, 홍삼초코 등)
	인삼액즙, 인삼엑스 (인삼정, 인삼정분 제외)	기타	인삼음료
	인삼차		기타인삼
	백삼조제품 (인삼캔디, 인삼초코 등)		기타 인삼액즙·엑스

- * 홍삼은 흑삼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
- ** 주원료가 100% 국산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도비지원품목(수삼, 백삼, 태극삼) 제외

다. 지원기준

- 1) 수출물량에 따른 표준물류비의 5%
- 2) 지원산식 = 수출중량 × 표준물류비 × 지원비율(5%)
 - * 항공운송 시 Chargeable Weight 기준으로 지급
 - ** 해상운송 시 수출신고필증상의 순중량(kg) 기준으로 지급

라. 지원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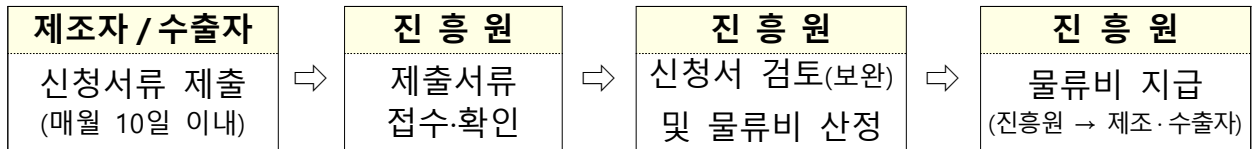
- 1) 업체당 연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 2022. 12. 1. ~ 12. 31. 수출선적분 지원신청액은 2022년도 지원상한액에 포함
 - ** 2022년도에 한도액(20백만원)을 지원받은 업체는 2023년도분부터 지원 가능
- 2) 수출건별 물류비 지원액은 선박 수출분은 수출액(FOB)의 10%, 항공 수출분은 수출액(FOB)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마. 지원기간

- 1) 2023. 1. 1. ~ 2023. 12. 10.까지 수출선적분(선박, 항공)
 - * 수출물류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비 잔액 범위 내,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

- 2) 출납폐쇄기한(매년 12월 31일)을 고려하여 2022. 12. 1. ~ 2022. 12. 31.의 수출 선적분은 2023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 3) WTO 농업협정 수출보조폐지 합의에 따라 2024년도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폐지 예정(일몰제 적용)

바. 지원절차



사. 신청방법

- 1) 신청기간: 매월 1일 ~ 10일까지 진흥원에 직접 신청(방문접수) 또는 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우편접수는 불가

* <https://gghda.kr>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수출물류비 지원(붙임1)

**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한 내 접수만 처리하되 10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또는 연휴 다음 평일까지 접수 (예: 6월 10일 토요일 ⇨ 6월 12일 까지 접수)

2) 신청서류

가)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붙임2)

나) 수출실적증명서(붙임3)

다) 반송 또는 현지폐기 물량 발생 시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붙임4)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붙임5)

마) 수출신고필증(수출자 원본대조필)

바) 선하증권(B/L), 항공운송장(Air Way Bill)(수출자 원본대조필)

※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이행」의 경우, 해상 선하증권(B/L) 제출을 불요(수출 신고필증으로 같음 가능)하나, 필요시에는 요구할 수 있음

① 해상 운송의 경우, 현행 지원기준(순증량)으로 산정

* 수출신고필증에서 ①9 운송형태(코드: 10), ③6 순증량, ④4 총증량 확인 및 관세청 UNI-PASS상 선기적 완료 여부, 증량 확인 후 지급 (미일치 시, 지급 불가)

②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장(Air Way Bill) 기준(Chargeable Weight)으로 산정하되, 항공운송장(AWB)이 없고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만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UNI-PASS상 항공편 및 선기적 중량 확인 후 순중량으로 산정
 * 단, 수출신고필증 ①9 운송형태(코드: 40)와 UNI-PASS상의 편명이
 반드시 항공(사) 코드로 표기되어야 함 (미일치 시, 지급 불가)

사) 입금통장사본(수출자, 제조자 ⇨ 개인 명의 통장 불가)

아) 건강기능식품품목 제조신고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자) 수출물류비 지원 동의(확인)서(수출자)(붙임6)

※ 위 서류 외에 진흥원에서 요청할 경우 성분배합 비율표, 원산지
 증명서, 수출 대금 입금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

아. 지원제외사항

- ①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로 관내 생산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붙임9)
- ② 수출물량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미제출 시(붙임9·10·11)
- ③ 반송 또는 현지 폐기 수출물량, 시험 및 견본 수출한 수출 실적분일 경우
- ④ 수출실적, 계약업체 등 허위 작성 및 부당한 방법으로 수출 물류비를 수령하였을 경우 ※세부 제재 기준 및 제재 기간(붙임12)
- ⑤ 의무자조금 참여대상 업체가 자조금 미납 시
 ※ 의무자조금 미납이 확인된 경우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을 중단하며, 물류비
 지원 재개일자는 인삼류 자조금 납부일로부터 기산
- ⑥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시

자. 기타사항

가) 신청서 검토 시 실제 수출여부를 관세청(UNI-PASS) 확인 후 지급

나) 수출물류비 지원액은 수출신고필증 건별로 십 원 단위 미만 절사

다) 수출중량은 kg단위, 소수점 이하 절사

라) 사업비 집행 시기는 가급적 1개월마다 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수출물류비 지급을 위하여 진흥원은 증빙서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자 및 생산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바) 위 지원계획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등은 「2023년 충청남도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을 준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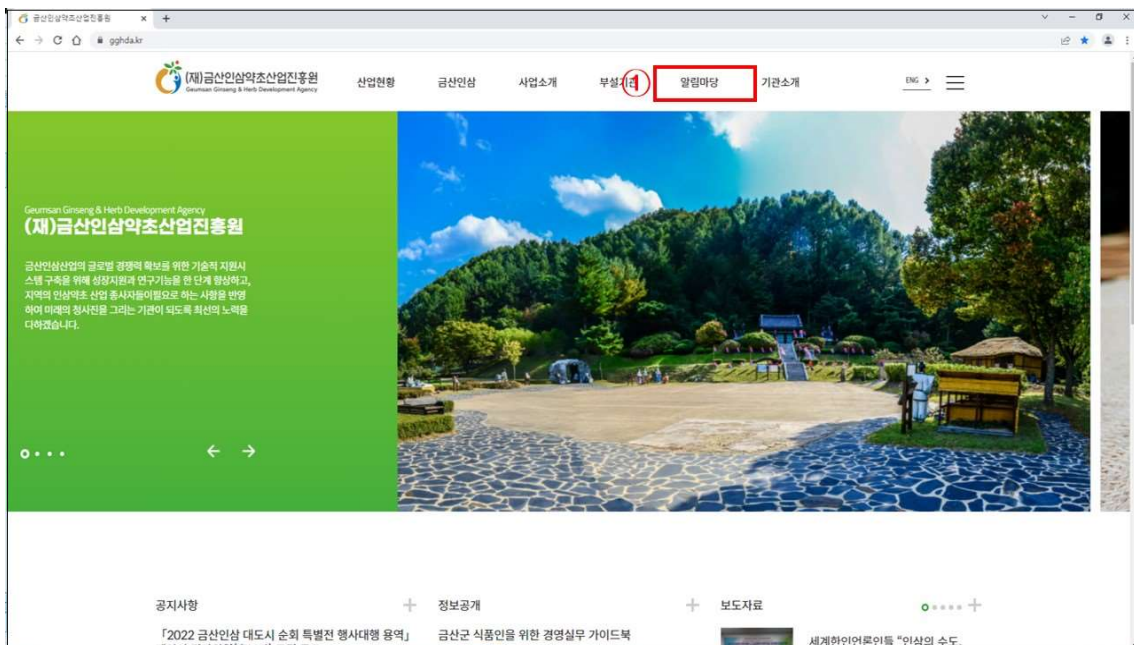
사) 문의처: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마케팅팀 (☎041-750-1673)

[붙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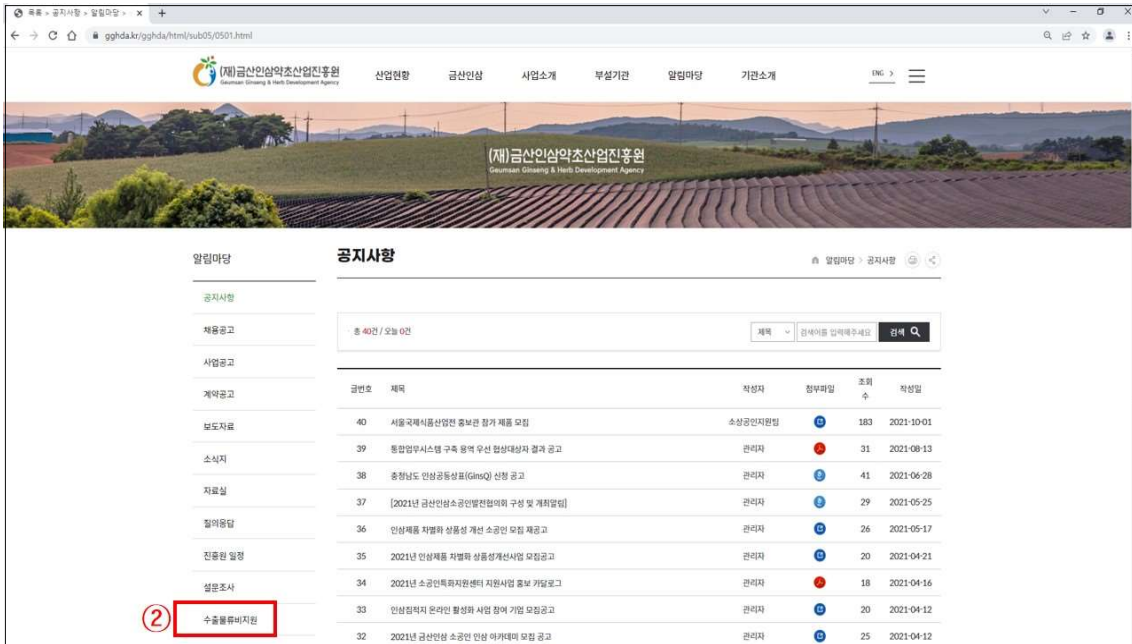
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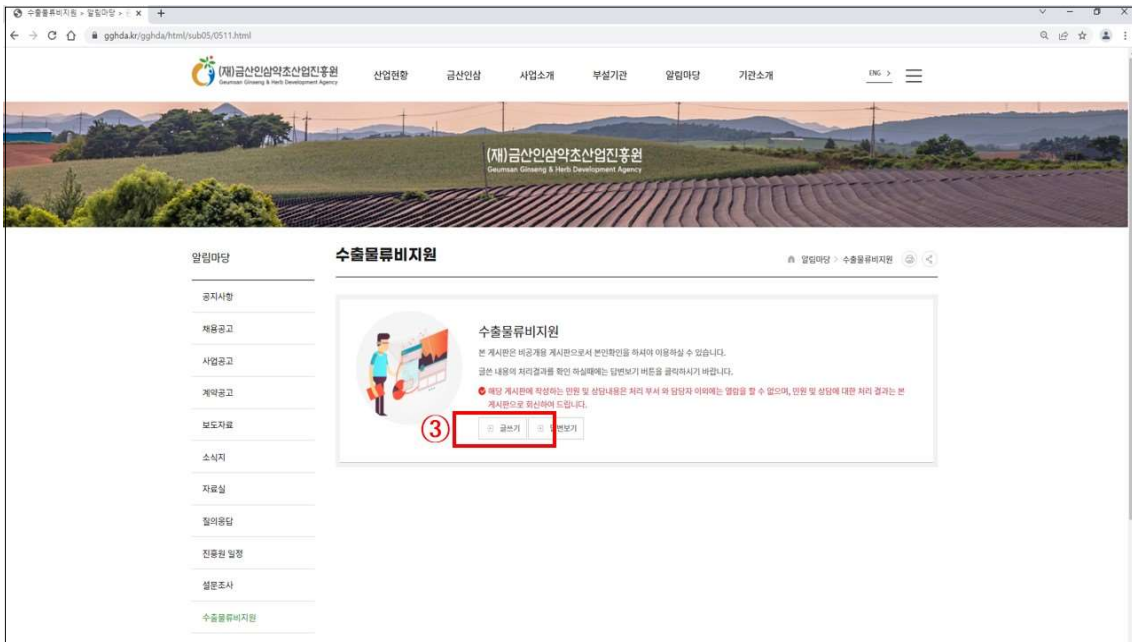
※ <https://gghda.kr/> 에 접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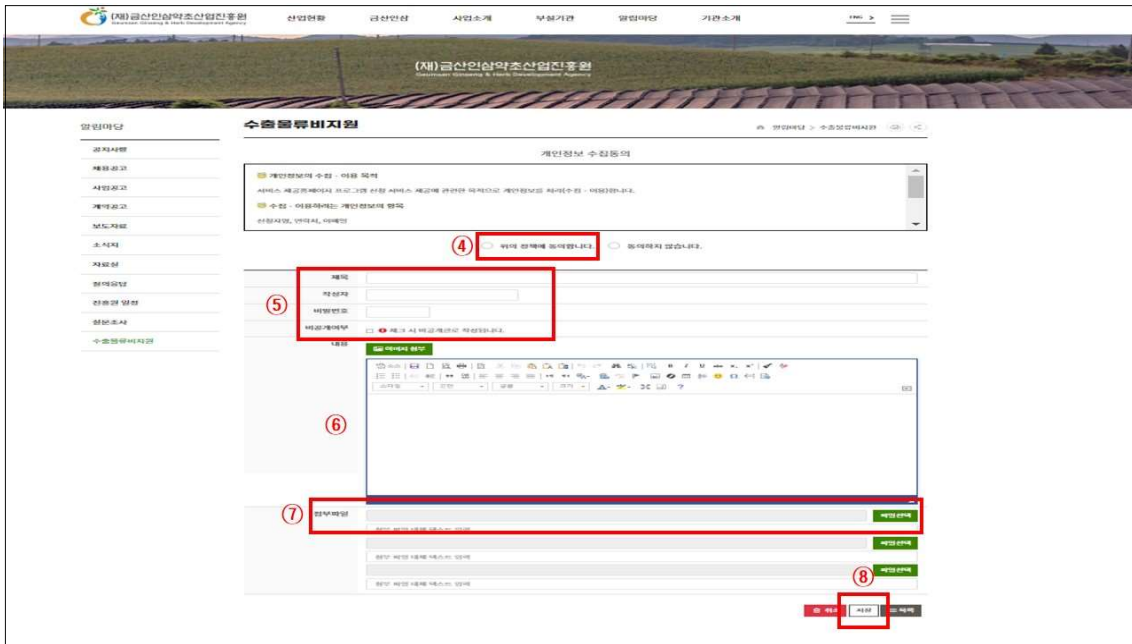
① 홈페이지에서 「알림마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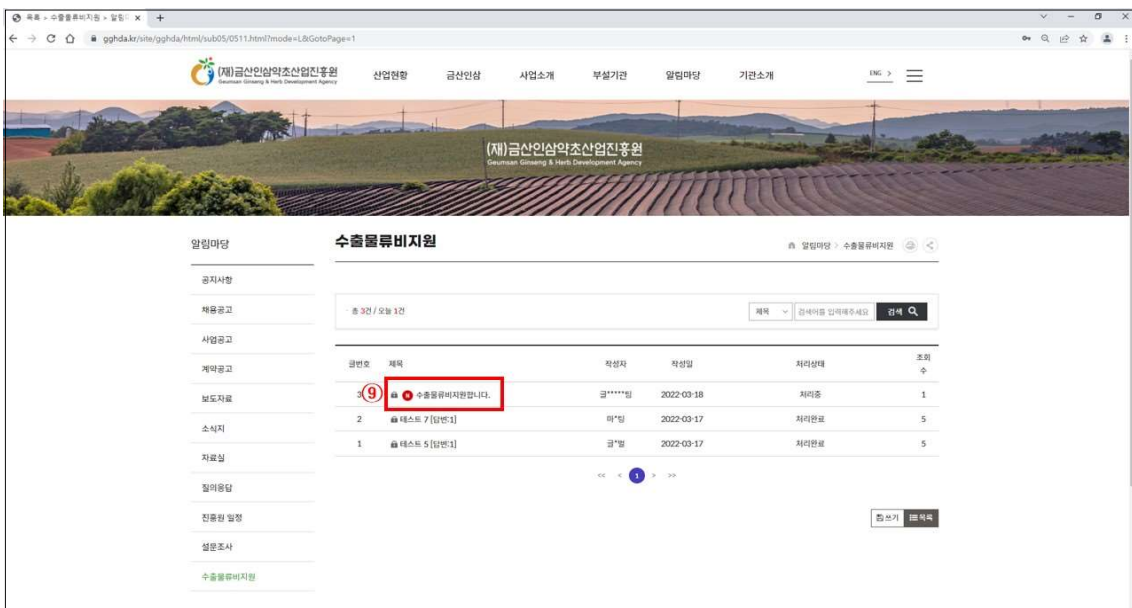
② 알림마당 클릭 후, 「수출물류비」 메뉴를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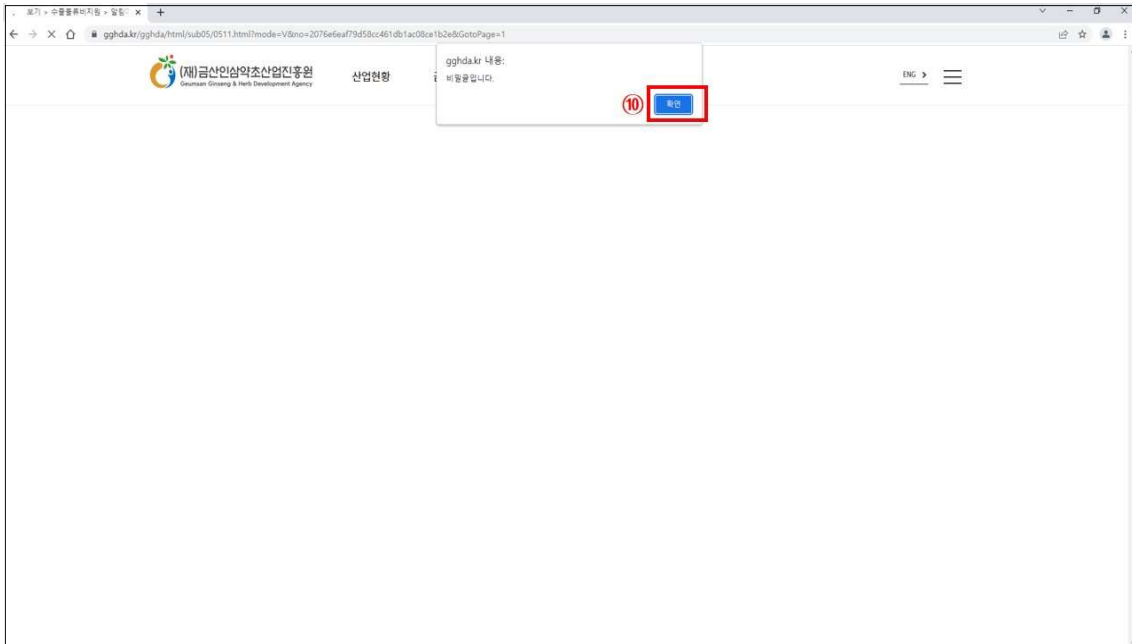
③ 수출물류비 클릭 후, 「글쓰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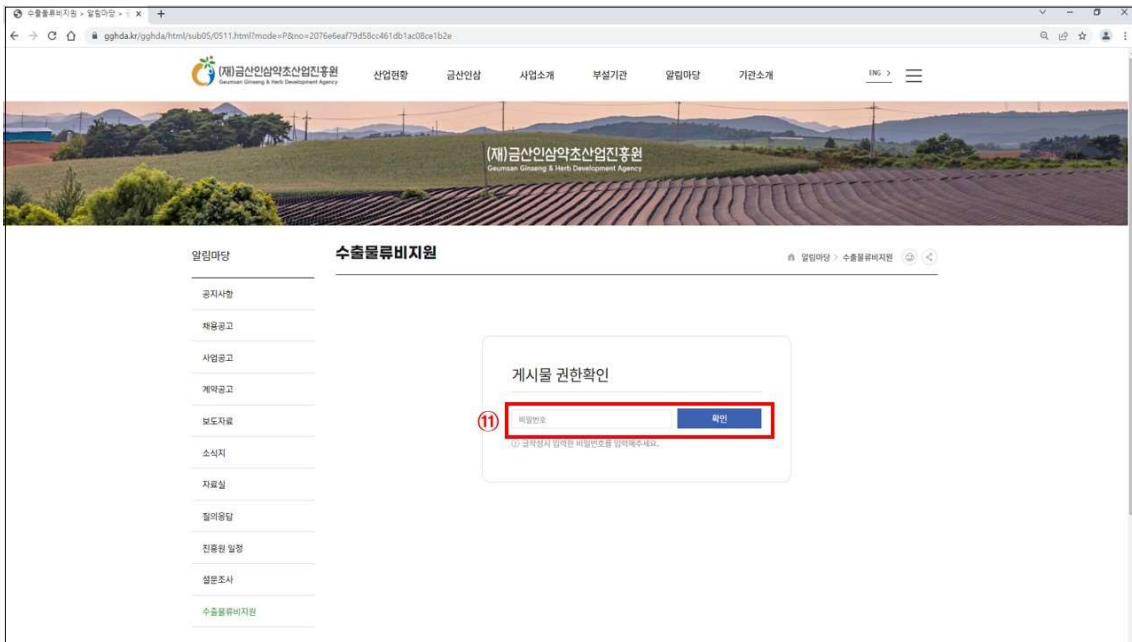
- ④ 개인정보 수집동의에서 「위에 정책에 동의합니다」 선택 후
- ⑤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를 작성하고, 「비공개여부」에 체크합니다.
- * ④ · ⑤항 미작성시, 온라인으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⑥ 「내용」란에 관련 사항을 간략히 작성합니다.
- ⑦ 「첨부파일」란에 파일선택을 클릭하여 제출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 * 총 3개 파일(최대 합산용량 100mb)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 ⑧ 내용 작성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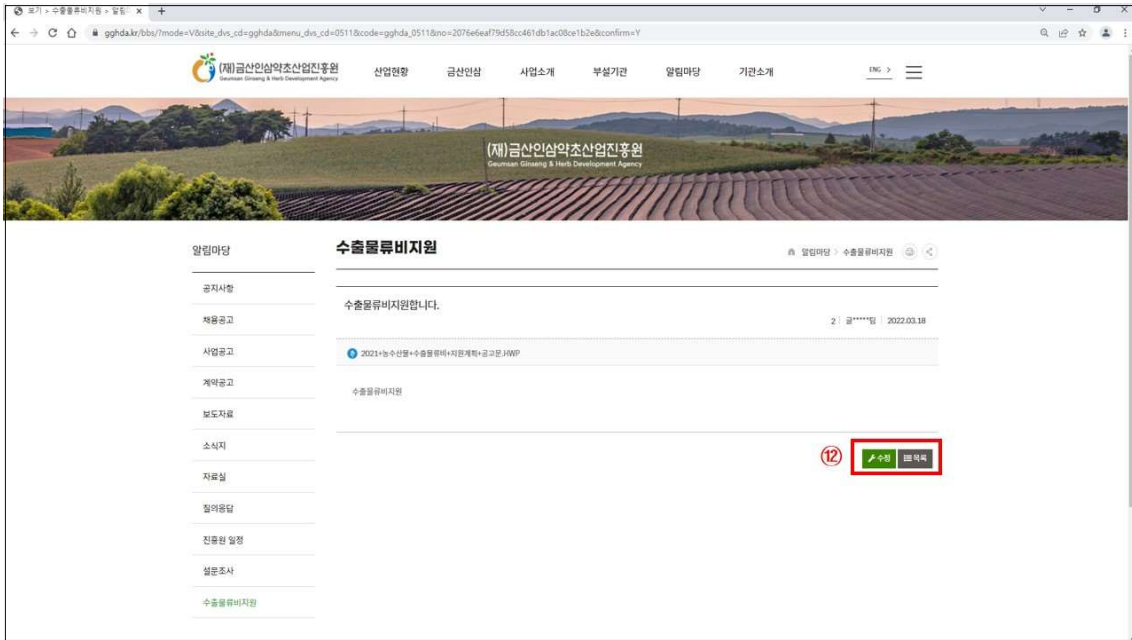
- ⑨ 저장 후, 작성 목록이 나타나며, 확인 시에는 작성한 제목을 클릭합니다.



⑩ ‘비밀글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면 「확인」 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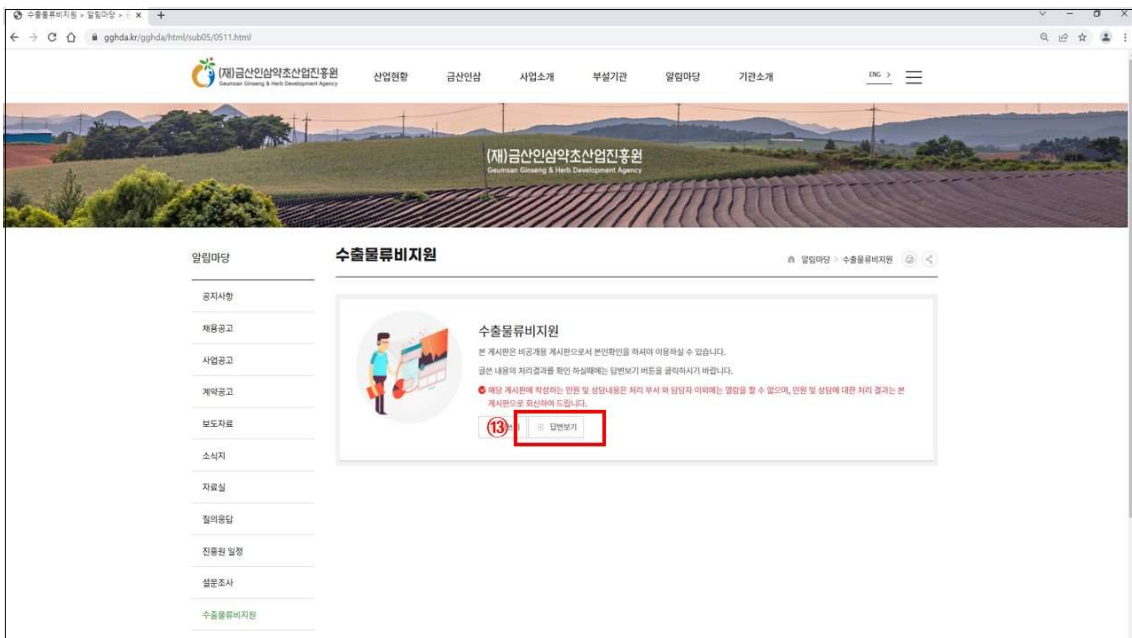


⑪ ⑤번에서 작성한 비밀번호를 기입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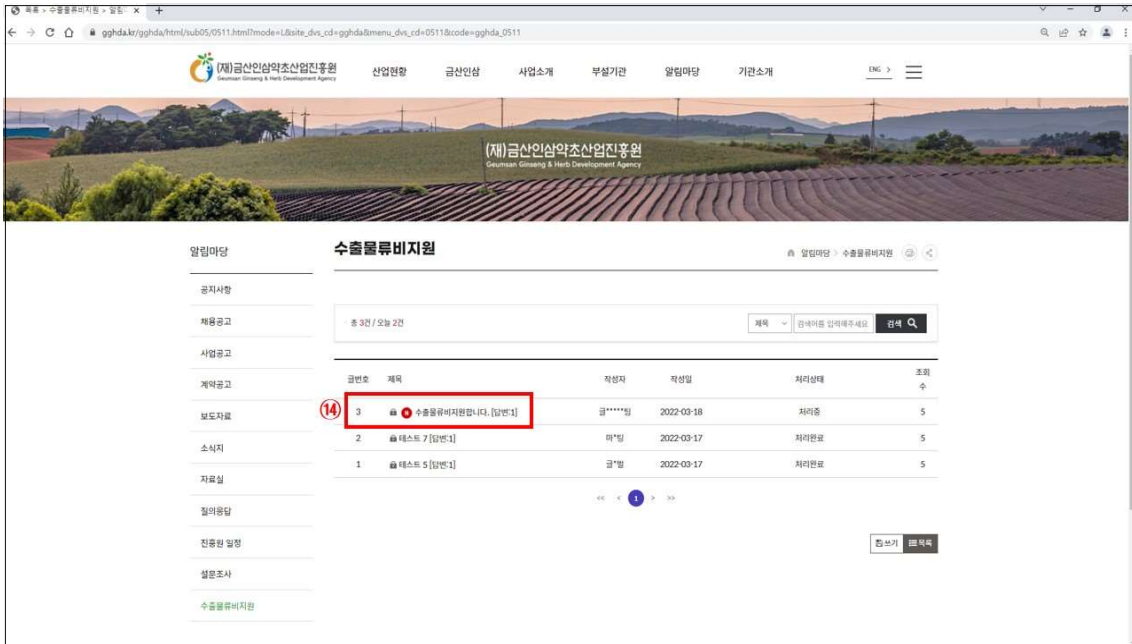


⑫ 작성 내용을 확인 후, 변경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클릭합니다.

※ 진행사항 및 답변 확인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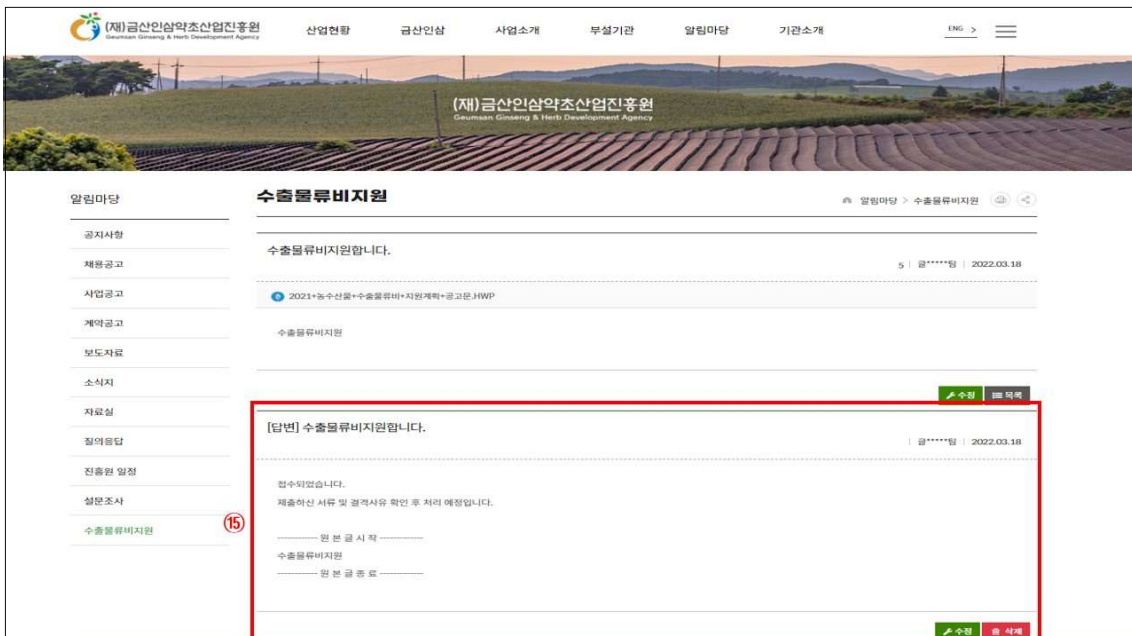


⑬ ①·②번과 동일한 절차 후, 「답변보기」를 클릭합니다.



⑭ 본인이 작성한 글제목을 클릭합니다.

* 사업담당자가 답변 작성 시, 제목란에 [답변] 문구가 생성



⑮ ⑩·⑪번과 동일한 절차 후, 사업담당자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2]

금산인삼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

신청자	업체(단체)명 (대표자 :)	전화번호 (H.P)	()	
	신청구분 생산() 수출()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E-MAIL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수출실적(2023. . . ~ 2023. . .)				
품 목	수 량	수출금액 (FOB)	수출국	수출업체
합 계	kg	\$		

2023년도 금산인삼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

성명

인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4]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

당사는 금산인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비를 신청함에 있어 수출 후 식물검역 또는 잔류 농약 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반송 또는 현지 폐기 된 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며,

반송되어 재수출 된 물량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재수출 된 내역대로 사전에 재 정산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일, 상기 건에 대해서 사전에 신고 또는 정산요청 없이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비를 즉시 반납하고 금산군 및 (재)금산인삼약초산업원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3.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인)

주 소 :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5]

대금지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마케팅팀에서는 금산인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 납세, 지방세목별 과세(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체납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산인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 납세, 지방세목별 과세(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체납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외에 변경 시에는 사전에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단체명(회사명),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직장), 은행명, 계좌번호, 법인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5년 동안 이용·보유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 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산인삼 수출물류비 지원 등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와 불이익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동의인

법인명(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병기*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충남 금산군

전 화 번 호 :

[붙임7]

표준물류비 산정현황

(단위 : 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인 삼 류	백삼제품	8,743	9,578	8,686	11,729	8,764	13,210	9,200	14,155	9,007	16,237	9,016	11,834	9,076	17,831
	인삼음료	5,563	6,502	5,521	8,653	5,578	10,133	5,917	11,079	5,717	13,161	5,724	8,758	5,683	14,755
	홍(흑)삼근	20,363	20,969	20,232	23,120	20,412	24,601	21,418	25,546	20,972	27,628	20,992	23,225	21,134	29,222
	홍(흑)삼제품	11,041	11,844	10,973	13,994	11,067	15,475	11,590	16,420	11,357	18,502	11,368	14,099	11,442	20,097

【 수출국 국가군 분류 】

구 분	대 상 국 가
일 본	일본
중 국	중국, 몽골, 홍콩
동남아	괌, 네팔, 대만, 라오스, 마셜제도,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마리아나제도,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등
미 주	과테말라, 도미니카,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하와이 등
유 럽	가나, 그리스,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사할린 포함),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모로코, 모리셔스, 벨기에, 불가리아, 세네갈,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에티오피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유고슬라비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중앙아프리카, 체코,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등
중 동	남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 리비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예멘, 오만, 요르단, 우간다, 이라크, 이란, 이집트, 조지아, 인도, 카타르, 케냐, 쿠웨이트, 탄자니아, 터키, 튀니지 등
극동러시아	극동러시아(블라디보스톡 또는 인근 항구를 통한 수출) * 사할린의 경우 유럽 지원단가 적용

※ 2023년 충청남도 농수산물 지원 계획 참고

[붙임8]

지원대상 품목 및 HS코드

- ① HS코드는 불일치하나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이 확실한 경우 지원가능, HS코드는 일치하나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이 아닐 경우 지원 불가능
- ② 가공식품의 경우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KATI) 수출입통계 및 식품공전(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기준에 준하여 소속부류 분류

① 인삼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홍삼(본삼)		1211-20-1391	홍삼 제품	홍삼분	1211-20-2210	
홍삼(기타)		1211-20-1399		홍삼태블릿, 캡슐	1211-20-2220	
인삼분		1211-20-2110		홍삼분말	1211-20-2290	
인삼태블릿, 캡슐		1211-20-2120		홍삼엑스	1302-19-1210	
인삼분말		1211-20-2190		홍삼엑스분	1302-19-1220	
인삼엑스		1302-19-1110		홍삼액즙, 홍삼엑스 (홍삼정, 홍삼정분 제외)	1302-19-1290	
인삼엑스분		1302-19-1120		홍삼차	2106-90-3021	
인삼액즙, 인삼엑스 (인삼정, 인삼정분 제외)		1302-19-1190		홍삼조제품 (홍삼캔디, 홍삼초코 등)	2106-90-3029	
인삼차		2106-90-3011		기타	인삼음료	2202-99-1000
백삼조제품 (인삼캔디, 인삼초코 등)		2106-90-3019			기타인삼	1211-20-9900
			기타 인삼액즙·엑스		1302-19-1900	

수출신고필증 사례

수출신고필증 (적재전) 감지

USD1,171.3
USD1,171.3

UNIPASS

※ 처리기간 : 즉시

① 신고자 사무소	⑤ 신고번호	⑥ 세관과 150-D9	⑦ 신고일자 2021-11-15	⑧ 신고구분 H 일반P/L신고	⑨ C/S구분 S
신고번호: 수출이행여부 확인시 조회					
② 수출대행자 (통관고유번호) 수출화주 (통관고유번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수출자구분 B	⑩ 거래구분 11 일반형태	⑪ 종류 A 일반수출	⑫ 결제방법 TT 단순송금방식	
거래구분 92(무상) 제외		⑬ 목적국 PRC	⑭ 적재항 부산항	⑮ 선박회사 (항공사) (항공사) 03078052	
		⑯ 선적(항공관용)	⑰ 출항예정일자	⑱ 직제에정보세구역 03078052	
		⑲ 운송형태 10 LC	⑳ 검사희망일 2021/11/15		
		㉑ 물품소재지	코드: 해상(40), 항공(10)		
① 제조자 (통관고유번호) 제조장소 321	② 제조장소: 금산의 우편번호		㉒ L/C번호	㉓ 물품상태 N	
④ 구매자 (구매자번호)			㉔ 사전입사개청정보여부 N	㉕ 반송 사유	
② 품명·규격 (관번호/종관수: 001/001)					
③ 품명 KOREAN RED GINSENG			④ 상표명		
⑤ 거래품명 KOREAN RED GINSENG					
⑥ 모델·규격		⑦ 성분	⑧ 수량(단위)	⑨ 단가(USD)	⑩ 금액(USD)
순증량 X 지원단가		1 란 을지	계속		
⑪ 세번부호 1211.20-1391	⑫ 순증량	360.0 (KG)	⑬ 수량 0 0	⑭ 신고가격(FOB)	\$123,953 W145,186,061
⑮ 송품장부호 202111-0008	⑯ 수입신고번호		⑰ 원산지 KR---Y	⑱ 포장갯수(종류)	1(GT)
⑲ 수중요건확인 (발급서류명)	71-A-기타 (야생동식물수출허가서)	71-A-기타 (야생동식물수출허가서)			
㉑ 순증량 720.0 (KG)	㉒ 송품장갯수 1(GT)	㉓ 신고가격 (FOB)	\$123,953 W 145,186,061		
㉔ 운임(W) 35,139	㉕ 보험료(W) 20,000	㉖ 결제금액	CIF-USD-124,000.00		
㉗ 수입화물 관리번호		㉘ 컨테이너번호	N		
※ 신고인기재란		※ 세관기재란 '20.7.1일부터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사용에 따른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신고시 신중히 기재하십시오. (unipass.customs.go.kr)			
UNI-PASS와 일치해야 함					
㉙ 운송(신고인) 기간	부허	㉚ 적재의무기한 2021/12/15	㉛ 담당자	2021/11/15	

발행 번호 :
 (1)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251조, 제277조) 또한 휴대전화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무코스공함)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수출입통관정보시스템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nipass.customs.go.kr)

Page : 1/2

※ 제조자 표시란에 군내업체명의 표기 및 제조장소에 군내 우편번호 표시여부 확인(32번으로 시작)

[붙임11]

선화증권(BL) 사례(해상)

CARRIER : EURO STAR LINE		BILL OF LADING	
1 Shipper MK TRADING SEOUL, KOREA TEL : 02-000-0000 FAX : 02-000-0000		11 B/L No. EURO STAR LINE CO., LTD. <small>RECEIVED by the Carrier from the Shipper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 indicated, to be carried subject to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provided for on the face and back of this Bill of Lading by the vessel named herein or any substitute or the Carrier's option under other modes of transport, from the place of receipt at the port of loading to the port of discharge or the place of delivery shown herein and there to be delivered in accordance therewith.</small> <small>If required by the Carrier, this Bill of Lading shall be subject to a receipt in exchange for the Goods or delivery order.</small> <small>In accepting this Bill of Lading, the Merchant agrees to be bound by all the stipulations, exceptions, terms and conditions on its face and back herein, whether written, typed, stamped or printed, in fully or if agreed by the Merchant, any local custom or practice to the contrary notwithstanding and agrees that all agreements of freight, demurrage, etc. and in connection with carriage of the Goods are superseded by this Bill of Lading.</small> <small>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on behalf of CK Line Co., Ltd. the Master and owner of the Vessel has signed the number of Bills of Lading stated under all of the items and dates of which being accomplished, do others in usual course.</small> <small>(Terms of Bill of Lading contained on the back hereof)</small>	
2 Consignee TO ORDER		3 Flag KOREA	
4 Notify Party SAME AS CONSIGNEE		4 Place of Delivery QINGDAO, CHINA	
5 Pre-carriage by	6 Place of Receipt	7 Ocean Vessel GOGO-XING	8 Voyage No. 0185W
9 Port of Loading ULSAN	10 Port of Discharge ULSAN	12 Place of transshipment to/Final Destination QINGDAO, CHINA	
13 Container No. & Seal No. Marks and Numbers 20' TGHU91919191/SY197107 20' TGHU91919192/SY197108 20' TGHU91919193/SY197109 20' TGHU91919194/SY1971010	14 No. & Kind of Pkgs/Cntrs 20' X 4 3,200 BAGS	15 Description of Goods "SHIPPER'S LOAD AND SEAL" SAID TO CONTAIN : LCD MODULE JT0TF0000 111 DOCUMENTARY CREDIT NUMBER : M12345678	16 Gross Weight G.W : 8,950.00KGS N.W : 8,100.00KGS
17 Measurement CBM 100.000		18 "FREIGHT PREPAID (CY/CY)"	
ORIGINAL LADEN CLEAN ON BOARD THE VESSEL : 19 GOGO-XING 0185W AT ULSAN, SOUTH KOREA PORT OF DISCHARGE : QINGDAO, CHINA			
20 "FREIGHT PREPAID (CY/CY)"			
Total number of packages or units (in words)			
21 Freight & Charges STOWAGE TRIMMING CHARGE THC AT DESTINATION	22 Revenue Tons	23 Rate USD 200 USD 100 USD 150	24 Per USD 200 USD 100 USD 150
25 Prepaid	26 Collect	27 Freight Prepaid at SEOUL	
28 Freight Payable at		29 Place of Issue	
30 Total Prepaid in	31 No. of Original B/L THREE / 3	32 Date of Issue JULY. 01. 2016	
33 Laden on board the Vessel Date JULY.03. 2016		By EURO STAR LINE CO., LTD.	

Form No. C-004

금산인삼 수출물류비 제재 기준

제재대상 및 내용	지원제한				
	경고	3월	6월	1년	2년 3년 이내
1. 수출물류비를 허위로 신청·수령한 경우					
가. 수출실적 서류를 위조하여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나. 국내산이 아닌 제품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다.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서 상 원재료 원산지 및 배합비율 허위 신고 시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라.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가공품의 주원료 국내산 원료비율 허위 신고 시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마.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2. 안전성기준 및 관련규정 위반					
가. 수입국 통관 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수출자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나. 수입국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에 따른 리콜 등의 조치를 당한 수출자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다. 수입국의 농약 또는 식품위생 안전성기준 위반으로 반송·폐기 또는 재수출후 자진신고한 경우 * 자진신고 기준 : 수입국 고시 후 30일 이내 (단, 식약처, 대사관 등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한 경우는 문서 시행일 이전)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라. 현지검역 과정에서 불합격된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국의 지정 요건(선과장, 도축장)을 충족하지 않은 수출품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에 대한 지원액 회수 및 수출자 지원제한				○	
마. <수출 농식품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운영기준>에 정한 불공정 거래행위, 수출질서문란행위 또는 수입국 농약·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에 따른 지원제한을 별도로 심의시에는 금산군(또는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제재					
3. 기 타					
가.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수출업체의 수출품목이 반송되었으나, 30일 이내에 금산군(또는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물량 지원액 회수 및 지원제한 * 1년 내 동일사건 발생 시 가중처벌 * 사유가 잔류농약초과검출인 경우는 2호 가항 적용	1회		2회 3회		
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또는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정당한 자료 요구에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회	2회			
다. 단순 착오에 의한 과오신청으로 인해 물류비를 과다 또는 중복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과오 지원액 회수 및 제재조치	1회	2회			

※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참고